

2025년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기반구축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2025년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기반구축 사업」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의료기기 관련 중소·중견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 3. 19.

(사)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광주·전남·충남이 차별적으로 보유한 인구 초고령화 특성에 기반한 노화질환 특화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제품』 사업화로 의료산업 선도 국내 융복합의료제품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 **사업내용:** 융복합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 **지원범위:** (융복합의료제품) 손상된 장기나 생체조직 회복을 위해 다양한 공학을 융합한 의료기기인 **생체의료소재부품**과 의료기기가 물리적, 화학적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해서 서로 복합적으로 결합된 **융복합의료기기**(의료기기·의약품 등 주작용이 의료기기)
※ 별표의 지원 범위 참고

문의처

| 기관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
| (사)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 | 김보미 연구원 | 041-417-7715 | qha5975@kbcluster.or.kr |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융복합의료제품 관련 제조기업
- 지원범위: 치과, 정형외과, 심혈관 분야 등 융복합의료제품(*[별첨] 참고)
- 수행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 2025년 10월 17일까지
- 지원프로그램: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 지원 프로그램 | | 지원규모* | 지원 건수 | 지원기관 |
|---------|---|--------------|-------|-----------------|
| 지원분야 | 세부내용 | | | |
| 기술지도 | 제품(기술) 개발 시 설계 및 시험, 제작 등 기술적 주요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지도 ① 공정 최적화 가상설계 및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술지도 ② 바이오 소재 및 제충개발 공정생산 등 GMP 과정 ③ 국내 및 국제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문서 등 인증 기술지도 ④ 시장 및 기술 동향 컨설팅 지원 ⑤ 제품 고도화 컨설팅 지원 | 최대 4,500천원/건 | 11건 | (사)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 |

* 지원규모는 추후 지원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사업단 자체 보유 인프라를 활용하여 직접 사업을 수행하며 수혜기업에게 별도의 사업비 지급은 없음)

○ 안내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신청 대상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 등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지 않은 사업에 한하며, 중복지원 사업으로 확인될 시 협약 해지 조치 될 수 있음
 - * 중복지원은 본 사업을 포함한 최근 2년 이내 동일 제품에 대한 동일 내용 지원 여부로 판단
- 지원 대상기업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되고,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위원회는 서면/비대면 평가로 진행되며 제품에 대한 인허가 추진 단계/상황 등 상세 작성 필수임. 또한 현재 기업의 개발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내용 및 범위가 조정추가 될 수 있음(이의제기 불가)
- 선정평가 시 최종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코칭을 통한 인허가 로드맵이 추가로 제공되며, 사업 수행기관이 직접 또는 연계하여 단일형/복합형으로 사업을 지원할 예정임
-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24호 (2023. 02. 08.) [별표 2]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을 적용하여 신청과제 사전검토 예정

○ 지원절차

| 절 차 | 세부내용 |
|--------------------------------|--|
| ↓ | |
| 모집 공고 및 접수(25. 3. 19 ~ 4. 24.) | 사업 참여 희망 기업 모집 및 지원신청서 접수(https://bsms.or.kr) |
| ↓ | |
| 기업예비진단(25. 4. 25.) | 중복지원 여부 및 기업현황 진단 - 기업지원 중복성 및 사전 제외 여부 검토 |
| ↓ | |
| 선정평가(25. 4. 28.) |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비대면 평가 진행 |
| ↓ | |
| 협약 및 사업수행(25. 5. 1. ~ 10. 17.) | 협약 및 사업수행 - 수행기관-기업간 사전 협의 必 |
| ↓ | |
| 중간 모니터링(협약 기간 내 상시) | 사업 진행 상황 중간 모니터링(상시) - 수행기관 ⇄ 수혜기업 간 상시 협조체제 유지/관리 |
| ↓ | |
| 결과보고 및 성과보고서 제출(25. 11월 초) | 결과보고 및 성과보고서 제출 - 수행기관 ⇄ 수혜기업 |
| ↓ | |
| 성과분석(25. 11.~26. 1.) | 수혜기업 지원성과 파악 등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접수방법

- 지원사업공고 및 접수 기간: **2025. 3. 19.(수) ~ 2025. 4. 24.(목) 18:00 까지**
- 신청방법: 바이오사업 관리 시스템(<https://www.bsms.or.kr>) 회원가입 후 시스템 접수
- 문의처

| 지원 프로그램 | 지원기관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
| 기술지도 |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 | 김보미 연구원 | 041-417-7715 | qha5975@kbcluster.or.kr |

4

제출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목록 |
|-----------|---|
| 필 수 |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 | ②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자필서명) |
| | ③ 약약서(중복지원 수혜 방지) 1부 |
| | ④ 자가진단표 1부 |
| | ⑤ 사업자등록증(제조업) 사본 1부 |
| | ⑥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
| | ⑦ 고용보험가입자목록(2022년, 2023년, 2024년 연도별 12월말 기준) 각 1부 |
| | ⑧ 재무제표(2022년, 2023년, 2024년) 각 1부 - 재무제표 미 발행 기업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국세청 홈택스 출력) |
| | ⑨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
| 해당 기업에 한함 | ⑩ 의료기기제조업허가증 |
| | ⑪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 | ⑫ 기업 보유 의료기기 인허가증 사본(MFDS, CE, FDA, NMPA, ISO13485 등) |
| | ⑬ 지식재산권 (특허·상표권·디자인·프로그램·실용신안 등) 보유 현황 |
| | ⑭ 우수기술인증(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인증 등) 증빙 |
| | ⑮ 정부인증 우수디자인 증빙, 정부 또는 협회 관련 수상실적 증빙 |
| | ⑯ 제품 기술 홍보 등 기업 소개 자료 |
| | ⑰ 이전 약약서(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지역 외 소재 기업) |

5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25점), 제품의 사업성(35점), 기대효과(20점), 기업역량(15점), 기타(5점)
-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기업 선정, 70점 미만 시 지원 불가

| 평가항목 | 배점 | 배점기준 |
|----------|-----|--|
| 사업계획 적정성 | 25 | - 본 사업 지원 필요성에 따른 명확한 사업 목표와 세부 계획의 부합성 - 구축 시설·장비 활용 가능성 - 사업 수행 기간의 적정성 |
| 제품의 사업성 | 35 | - 해당 제품의 국내외 시장현황 및 시장 성장 가능성 - 해당 제품의 우수성 및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 조기 상용화 및 사업 성공 가능성 |
| 기대효과 | 20 | - 의료산업 발전 기여 가능성 및 신시장 창출 잠재력 -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효과 기여도 |
| 기업역량 | 15 | - 해당 산업분야 R&D 역량 및 과제 수행 능력 - 핵심 제품(기술) 보유 현황 및 보유 기술 수준의 우수성 - 예비수혜기업의 사업화 및 기술 역량 * 사업화 역량 : 주력 제품군, 최근 3년간 기업매출 증가율, 수출 실적, 사업화 실적 등 * 기술 역량 : 기업 전체 보유 특허 및 필요 기술 관련 기술·제품 보유 특허, R&D 인력 채용 계획 등 |
| 기타 | 5 | - 수행기관 간 연계협력 지원 가능 여부 등 |
| 총계 | 100 | |

6 기타(성과 활용 동의)

- 매출 성과 활용 조사 및 고용창출 성과 활용 동의 : 기술서비스 및 기술제품 사업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경우, 지원 받은 제품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매출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 필요
- 본 사업과 연계된 네트워킹 활동(세미나, 협의체, 워크숍 등) 적극적인 협조 필요

[프로그램 세부 안내 - 기술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명 |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기반 구축 사업 | | | | | | | | | | | | | | | | | | |
| 지원 프로그램 | 기술지도 | | | | | | | | | | | | | | | | | | |
| 대상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복합의료제품 관련 우수 기술 보유 중소기업(3, 4등급 우대)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기업 | | | | | | | | | | | | | | | | | | |
| 지원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도 지원항목 중 지원이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단 자체 보유 인프라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직접 수행하며 수혜기업에게 별도의 사업비 지원은 없음 - 기업별 최대 지원액을 고려하여 전문가 수 및 기술지도 횟수 계상 - 지원금 지급 방법 및 지원절차는 수행기관의 규정 및 협약서에 따름 - 사업비 집행내용은 아래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 | | | | | | | | | | | | | | | | | |
| 수행기간 | 협약 후 5개월 이내 | | | | | | | | | | | | | | | | | | |
| 상세내역 | 지원기관 | 지원내용 | | | | | | | | | | | | | | | | | |
| | (사)한국바이오 특화센터협의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 최적화 가상설계 및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술지도 - 바이오 소재 및 제품개발 공정생산 등 GMP 과정 - 국내 및 국제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문서 작성 기술지도 - 시장 및 기술 동향 컨설팅 지원 - 제품 고도화 컨설팅 지원 등 | | | | | | | | | | | | | | | | | |
| 사업수행절차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 text-align: center;">협 약</td> <td style="width: 25%; text-align: center;">사업수행</td> <td style="width: 25%; text-align: center;">결과 및 성과 보고서 제출</td> <td style="width: 25%; text-align: center;">사업 만족도 조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협약체결(2자협약)</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원프로그램 수행 (필요시 전문가 섭외 및 매칭)</td> <td style="text-align: center;">결과보고서 및 지원성과 제출</td> <td style="text-align: center;">수행기관 및 지원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제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행기관 ↔ 기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수행기관 ↔ 기업 (수행기관 ↔ 기업 ↔ 전문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업 → 수행기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업 → 수행기관</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 ⇒ ⇒</td> </tr> </table> | | | 협 약 | 사업수행 | 결과 및 성과 보고서 제출 | 사업 만족도 조사 | 협약체결(2자협약) | 지원프로그램 수행 (필요시 전문가 섭외 및 매칭) | 결과보고서 및 지원성과 제출 | 수행기관 및 지원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제출 | 수행기관 ↔ 기업 | 수행기관 ↔ 기업 (수행기관 ↔ 기업 ↔ 전문가) | 기업 → 수행기관 | 기업 → 수행기관 | ⇒ ⇒ ⇒ ⇒ | | | |
| | 협 약 | 사업수행 | 결과 및 성과 보고서 제출 | 사업 만족도 조사 | | | | | | | | | | | | | | | |
| | 협약체결(2자협약) | 지원프로그램 수행 (필요시 전문가 섭외 및 매칭) | 결과보고서 및 지원성과 제출 | 수행기관 및 지원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제출 | | | | | | | | | | | | | | | |
| | 수행기관 ↔ 기업 | 수행기관 ↔ 기업 (수행기관 ↔ 기업 ↔ 전문가) | 기업 → 수행기관 | 기업 → 수행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기구 기계[기구·기계] Medical Instruments |
| A09000 내장 기능 대용기 Artificial internal organ apparatus |
| A17000 심혈관용 기계 기구 Cardiovascular devices |
| A18000 비뇨기과용 기계 기구 Urology devices |
| A38000 결찰기 및 봉합기 Instruments for ligature and suture |
| A41000 의료용 칼 Knives for medical use |
| A42000 의료용 가위 Scissors for medical use |
| A43000 의료용 큐렛 Curettes for medical use |
| A44000 의료용 클램프 Clamp for medical use |
| A45000 의료용 겸자 Forceps for medical use |
| A46000 의료용 톱 Saw for medical use |
| A47000 의료용 끌 Chisel for medical use |
| A48000 의료용 박리자 Raspatories for medical use |
| A49000 의료용 망치 Mallet for medical use |
| A50000 의료용 줄 File for medical use |
| A51000 의료용 레버 Lever for medical use |
| A52000 의료용 올가미 Snare for medical use |
| A53000 주사침 및 천자 침 Needle for syringe and puncture |
| A54000 주사기 Syringes |
| A55000 의료용 천자기, 천착기 및 천공기 Puncturing, abrasion, perforating instrument for medical use |
| A56000 개창 또는 개공용 기구 Wound retractors and speculums |
| A57000 의료용 취관 및 체액 유도관 Tube and Catheter for medical use |
| A58000 의료용 소식자 Probe and Sound for medical use |
| A59000 의료용 확장기 Dilator and expander for medical use |
| A60000 의료용 도포기 Applicator for medical use |
| A61000 혼합 및 분배용기구 Dispenser and Mixing instrument |
| A62000 의료용 충전기 Filling instruments for medical use |
| A63000 의료용 누르개 Depressors for medical use |
| A64000 측정 및 유도용 기구 Measuring and introducing instrument |
| A65000 의료용 세정기 Douche instruments for medical use |
| A67000 정형 및 기능 회복용 기구 Medical device for orthopedics and restoration |

| | |
|---|-------------------|
| A70000 치과용 브로치 Broaches for dental use | |
| A71000 치과용 탐침 Explorers for dental use | |
| A73000 인상 채득 또는 교합용 기구 Impression taking and articulating instruments | |
| A74000 치과용 중합기 Vulcanizers and curing units for dental use | |
| A77000 눈 적용 렌즈 Ophthalmic lens | |
| A79000 의약품 주입기 Infusion instruments | |
| A84000 침 또는 구용기구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pparatus | |
| (B) 의료용품 Medical supplies | |
| B02000 봉합사 및 결찰사 Suture and ligature | |
| B03000 정형용품 Orthopedic materials | |
| B04000 인체 조직 또는 기능 대체품 Human tissue and organ substitute | |
| B05000 부목 Splints | |
| B07000 외과용품 Surgical supplies | |
| (C) 치과 재료 Dental Materials | |
| C01000 치과가공용합금 | C14000 치과용왁스 |
| C02000 치과주조용합금 | C16000 예방치과재료 |
| C03000 메탈세라믹합금 | C17000 치과교정재료 |
| C04000 납착용합금 | C18000 악안면성형용재료 |
| C05000 가공용합금 | C19000 악골치아고정장치 |
| C06000 직접수복재료 | C20000 치과용임플란트시스템 |
| C07000 심미치관재료 | C21000 치과임플란트시술기구 |
| C08000 의치재료 | C22000 치과용골이식재 |
| C09000 의치상재료 | C23000 치주조직재생유도재 |
| C10000 근관치료재 | C24000 치과용진단제 |
| C11000 치과접착용시멘트 | C25000 보철물분리재료 |
| C12000 치과용접착제 | C26000 기타보철재료 |
| C13000 치과용인상재료 | C27000 기타보존재료 |

[별표 2]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제출서류 검토

-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을 때
-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

②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이하 "과제"라 한다)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 과제의 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추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등에 대한 중복성 검토를 위해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제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제외),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한다.

| 구분 | 사 전 지 원 제 외 | 사 후 관 리 |
|-------|--|---|
| 검토 기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M)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 | <p>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회계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

| | | |
|----|--|---|
| | <p>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 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p> | |
| 조치 | <p>○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p> | <p>○ 신규평가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수행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등을 실시 - 진도점검 등 결과 "연구개발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p> |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⑥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수행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연구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지역요령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한다.

⑦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단, 지역요령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 정상기업 | 한계기업 |
|----------------|------|------|
| 중견기업 | 5 | 4 |
| 중소기업 | 3 | 2 |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 ⑨ 사업별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⑩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비고

1. 기본사업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함